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.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(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9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최근 땅 꺼짐 사고와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,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라.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 ~ 제10조)
- 마.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(안 제11조)
- 바.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(안 제12조)
- 사. 지하개발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3)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
-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함.

4)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~제10조)

- 구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함.

5)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(안 제11조)

-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6)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(안 제12조)

7) 지하개발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(안 제13조)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천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50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